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776호
2023년 4월 17일
월요일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공 고 제 8 1 8 호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문 화 관 광 과 2
- 공 고 제 8 1 9 호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문 화 관 광 과 7
- 공 고 제 8 2 0 호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문 화 관 광 과 37

고 시

- 고 시 제 5 2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토 지 정 보 과 47

회 람								
--------	--	--	--	--	--	--	--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818호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4. 14.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축제운영을 위탁 할 경우 수탁기관에서 '축제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축제위원회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탁기관에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조례 제36조(축제위원회의 구성) 제5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문화관광과
 - 연 락 처 : 전화 453-2132, FAX 453-213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4. 참고자료

-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3년 5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축제운영을 위탁 할 경우 수탁기관에서 '축제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축제위원회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수탁기관에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조례 제36조(축제위원회의 구성) 제5항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4조에 따라 축제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관리 기간에는 수탁기관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6조(축제위원회의 구성) ① ~ ④ (생략) <신설>	제36조(축제위원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4조에 따라 축제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관리 기간에는 수탁기관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819호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4. 14.

남 동 구 청 장**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현재 소래아트홀 운영 현실과 맞지 않는 관람시간, 매표수수료 조항 등을 삭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탁기관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근거 명시 : (안 제1조)
- 아트홀의 설치 위치 명문화 : (안 제3조)
- 관람시간 조항 삭제 : (안 제4조제2항)
- 시설명칭 현실화 : (안 제7조)
- 매표·수표의 사용자 책임을 명시 : (안 제15조)
- 매표수수료 관련 조항 삭제 : (안 제15조제2항,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문화관광과
 - 연 락 처 : 전화 453-2132, FAX 453-213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4. 참고자료

○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3년 5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소래아트홀 운영을 위탁 할 경우 수탁기관의 현장 상황에 맞게 정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서식 등을 현장상황에 맞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래아트홀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소래아트홀 운영 위탁시 관람권 판매금액에 대한 구금고 납입 기한 연기: (안 제22조제3항)
- 업무서식 예외규정 신설: (안 제27조)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남동구 규칙 제 호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다.)”를 “한다)을 운영하는 기관의”로 한다.

제5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제3조제1항”을 “제4조 단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제2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9조제2항”을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10조제1항제1호”를 “제1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0조제1항제3호”를 “제11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기획공연·전시 및 여성합창단 공연”을 “기획공연·전시”로 한다.

제2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공모사업 및 공동제작 등 타 기관이 정산의 주체가 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기획공연·전시 및 여성합창단 공연”을 “기획공연·전시”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아트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구금고
납입기한을 정산일로부터 30일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 중 “제18조”를 “제19조”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업무서식 예외) 이 규칙에서 적용하는 시설의 사용에 대해서는 시설
수탁기관의 규정 등에 따른 별도의 서식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를 별표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관람료 면제대상 범위(제21조제2항제2호 관련)

대 상	장 소	범 위	비고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각종 국경일 및 기념일 행사	실내.외 공연장	기관·단체대표, 일반시민 등	
지역발전을 경축하는 행사 및 각종 문화 공연·전시 (회관 기획공연 등)	“	해당분야 관련법상 유공자, 기관·단체 대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 위 의료급여 특례대상자, 소년소녀가 장, 보육료지원대상자,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일반저소득층 등	
신년 및 송년행사	“	“	
시민문화 강좌	“	“	
남동구 산하기관 및 직원을 대 상으로 하는 공연·전시	“	직 원	

[별지 제1호 서식]

남동소래아트홀 사용신청서						처리기간	
						정기 30일 / 수시 7일	
단 체 명 (신 청 인)		대표자 성 명		법인번호 /주민등록 번 호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전 시 . 공 연 행사의 명칭							
전 시 . 공 연 행사의 내용							
사 용 일 시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회 시 간)						
행 사 . 안 내 요 원 수			출 연 인 원 수				
			관람예상인원수				
사용시설 및 설비	기본시설	☐ 대공연장 ☐ 소공연장 ☐ 전시실(갤러리)					
	부속시설	☐ 스튜디오 () ☐ 연습실 () ☐ 야외공연장 ☐ 문화교실 () ☐ 회의실 (대, 소)					
입 장 료							
첨 부	1. 행사계획서 및 공연신고필증(또는 사본 각 1부) 2. 기타 입증서류 1부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성 명 : (인) 남동구청장 귀하							

<뒷면 계속>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남동소래아트홀은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용료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처리
 - 대관 신청 정보 제공
 - 본 아트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설문 조사 등
2. 수집하려는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1년
4.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대관 신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으며, 사용료 납부 및 환불시 본인 확인이 불가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허 가 조 건

(뒷면계속)

○ 사용료를 사용허가일로부터 14일 내에 전체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액은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대관일 경우에는 계약체결후 7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허가를 취소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례 제8조, 규칙 제9조, 규칙 제12조)

○ 허가받은 시간 외의 사전사용(무대연습, 무대설비 등)은 할 수 없으며, 사전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규칙 제9조)

○ 사용기간이 지연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례 제1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합니다. (조례 제11조)

○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시설사용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전체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전체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일수만큼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며 해당 공제금액의 상한선은 전체 사용료 이내로 한다. (규칙 제14조)

○ 남동구청장은 천재지변 및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조례 제9조)

- 사용허가조건 위반 및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
-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본 아트홀의 검인이 없는 초대권 및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으며, 검인신청은 공연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입장금액,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조례 제14조 및 규칙 제19조)

○ 음향 및 조명시설물 등은 본 아트홀의 시설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외부로부터 반입할 경우 대관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용자는 공연장과 아트홀내·외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사진행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발생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함은 물론 관람객의 각종 안전사고발생 및 시설물 훼손 시에도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조례 제12조, 규칙 제15조 및 제16조)

○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무대스텝과 공연진행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무대스텝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규칙 제17조)

○ 공연장내 촬영과 녹음은 공연자의 동의를 얻은 후, 무대스텝의 허가 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귀 아트홀의 허가조건 및 아트홀사용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성명 :

(서명)

아트홀사용시 유의사항

행사 및 공연을 하기 위해 남동구소래아트홀을 사용하고자 하는 분께서는 시설유지상 또는 공중위생상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읽어 보시고 행사 및 공연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1. 공연장 안에서는 음료수, 커피, 물 등을 마시거나 식사 등은 절대 불가하며, 화환, 꽃다발, 음식물 등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2. 행사 중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하여는 규격봉투를 미리 준비하여 행사 종료 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하시고 발생한 쓰레기는 반드시 반출해 나가야 합니다.
3. 행사시 도난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아트홀이 책임지지 않사오니 귀중품은 주최 측의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4. 주최자는 행사 및 공연시작 전 반드시 위의 1, 2, 3항을 행사 참석자 및 관람자에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5. 본 아트홀 내 부착할 광고물(현수막, 현판 등)은 아트홀과 협의 하여야 하며, 현수막 게첩은 각 1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현수막은 광장 현수막 게시대(6m×0.9m), 대공연장 바텐(14m×1m이내), 소강당 현수막 게시대(9m×0.6m)에 일정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행사 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그 외의 광고물은 아트홀 내 부착할 수 없습니다.(규칙 제16조)
6. 각종 홍보물(현수막 및 벽보 등)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적법하게 부착하여야 하고, 현수막은 남동구청 도시디자인과에서 필히 검인을 득하여야 하며, 만일 불법게시로 적발되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고발 조치합니다. 또한, 공연 및 행사 후에는 반드시 홍보물(현수막 및 벽보 등)을 철거하여야 합니다.
7. 아트홀의 시설과 공연장은 주민의 문화예술 생활을 위해 지어진 시설이므로 개최하는 행사 및 공연 내용이 본래의 대관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깨끗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항을 준수하시어 행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아트홀대관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남동구소래아트홀 (☎ 032-000-0000 / Fax 032-000-0000)로 연락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행사 및 시설사용 계획서							
공연(행사)장소				공연(행사)명			
공연(행사)일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사 전 준 비		년 월 일(시 ~ 시)	
				리허설및무대연습		년 월 일(시 ~ 시)	
				본(행사)공연		년 월 일(시 ~ 시)	
출연예상인원		장비반입		연락처		전 화 : 휴대폰 :	
☐ 공연장 부대설비 사용여부							
시설물		사용계획(시간)		시 설 물		사용계획(시간)	
무 대 조 명	기 본	대공연장		무 대 시 설	바 텐	총 사 용	
		소공연장				공 연 작 동	
	Follow Pin		덜 마 루				
	Moving Light		샤 막				
	Elipsoid Light		댄스플로어		검정색		
	Strobe Light				회 색		
	Par 64		음 향 반 사 판		본 행 사		
	Par46(1세트 8대)		피 아 노		공연행사준비		
	Bank(1세트 4구)				본 행 사		
	드라이아이스 기계		냉 . 난 방				
포그 기계		분장실		개 인			
무 대 음 향	음향콘솔		대공연장		단 체 (남.여)		
	CD플레이어포함						소공연장
	메인스피커(1식)		대공연장				
	앰프포함						소공연장
	모니터스피커(개별)		대공연장				
	앰프포함						소공연장
	유선마이크(다이나믹)		대공연장				
	스탠드 포함						소공연장
	유선마이크(콘덴서)		대공연장				
	스탠드 포함						소공연장
무선마이크		대공연장					
배터리, 스탠드 포함						소공연장	
빔프로젝터		15,000Ansi(대)		※ 유의사항 - 사용자 직접설치 (필요시 설치 및 운용 인건비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피아노조율비(지정조율사) 등 사용자 부담			
		4,500Ansi(소)					
M . R		공연행사준비					
		본 행 사					
위 공연(행사)를 위하여 대관규칙 및 무대안전규칙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 행사주체 담당자 성 명 : (서명) ☐ 남동소래아트홀담당자 성 명 :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앞면>

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단 체 명	성 명		생 년 월 일		장 소		
행사일시	년 월 일	요일(요일간)	주 소				
☐ 부속시설 및 부대설비 변경사용 여부							
시설명	사 용 시 간		사용료	시 설 명	사 용 여 부		사용료
공연행사 준 비	당 초			무 대 시 설	바 텐	공연행사준비	
	추 가				본 행 사		
본 행 사	당 초			시 설	댄스플로어		
	추 가				음향반사판		
무대조명	기 본		대공연장	기 타 시 설	피아노	공연행사준비	
			소공연장		본 행 사		
	Follow Pin				냉 . 난방		
	Moving Light				분장실	개 인	
	Elipsoid Light				단체(남,여)		
	Strobe Light				연습실	1,2,3,4	
	Par 64				대 . 소도구		
	Par 46(1세트8대)				기 타		
	Bank(1세트4구)						
	드라이아이스기계						
무대음향	음향콘솔		대공연장	사 용 료	기 존	금 _____ 원정 (\ _____ 원)	
	CD플레이어포함		소공연장				
	메인스피커(1식)		대공연장				
	앰프포함		소공연장				
	모니터스피커(개별)		대공연장				
	유선마이크(다이나믹)		대공연장		변 경	금 _____ 원정 (\ _____ 원)	
	스탠드 포함		소공연장				
	유선마이크(콘덴서)		대공연장				
	스탠드 포함		소공연장				
	무선마이크		대공연장				
배터리, 스탠드 포함		소공연장					
빔프로젝터		15,000Ansi(대)					
		4,500Ansi(소)					
M . R		공연행사준비					
		본 행 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연(행사)의 시설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남동구청장 귀하							
년 월 일							
☐ 행사주체 담당자							
성 명 : (인)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남동소래아트홀은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용료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처리
- 대관 신청 정보 제공
- 본 아트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설문 조사 등

2. 수집하려는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1년

4.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대관 신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으며, 사용료 납부 및 환불시 본인 확인이 불가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허가서

사 용 자	단 체 명 (성 명)		대표자 성 명		생년월 일	
	주 소					
명 칭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사 용 시 설		기본시설	☐ 대공연장 ☐ 소강당 ☐ 전시실(갤러리)			
		부속시설	☐ 스튜디오 () ☐ 연습실 () ☐ 야외공연장 ☐ 문화교실 () ☐ 회의실 (대, 소)			
사 용 료	계		기본설비/ 부속시설		부대설 비	
계 약 금						
납 부 기 한						
기 타 사 항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남동소래아트홀 사용 허가대장

일련 번호	사 용 허 가 자	신청자	프로그램명	사용기간	연락처	비 고

[별지 제6호 서식]

<앞면>

남동소래아트홀 사용료 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정기 30일 / 수시 7일	
단 체 명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				대표전화번호		
				휴 대 폰		
공연전시행사 명 칭						
공연.전시. 행사의 내용						
사 용 기 간	년	월	일	부터	출연자수	()명
	년	월	일	까지	관람예정객수	()명
사 용 시 설 및 설 비	기본시설	☐ 대공연장 ☐ 소강당 ☐ 전시실(갤러리)				
	/	☐ 스튜디오 () ☐ 연습실 () ☐ 야외공연장				
	부속시설	☐ 문화교실 () ☐ 회의실 (대, 소)				
	부대설비					
감 면 신 청 사 유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인) 남동구청장 귀하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남동소래아트홀은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용료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처리
- 대관 신청 정보 제공
- 본 아트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설문 조사 등

2. 수집하려는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1년

4.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대관 신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으며, 사용료 납부 및 환불시 본인 확인이 불가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알면>

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단체명(대표자명) / 성 명			전화번호 (휴대폰)			
	법인번호 / 생년월일			관 계			
	주 소						
당초신청내용	사용허가시설			행 사 명 (공연/전시)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납부한 사용료	금 원정 (\)						
입 금 계 좌	은 행 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취소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전부)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방 문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임자) 생 년 월 일 : 주 소 : 남동구청장 귀하							
< 위 임 장 >							
남동소래아트홀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전환) 반환 신청을 상기인에게 위임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임자) 생 년 월 일 : 주 소 :							
첨 부	1. 예금통장사본 (신청인 또는 법인 명의) 1부 2.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소속 직원 방문시) 3. 방문자 신분증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남동소래아트홀은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용료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처리
 - 대관 신청 정보 제공
 - 본 아트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설문 조사 등
2. 수집하려는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1년
4.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대관 신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으며, 사용료 납부 및 환불시 본인 확인이 불가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illegible]

[별지 제9호 서식]

<앞면>

대관공연관람권 검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주 최			공 연 자		
공 연 명			공연장소		
공연일시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까지(일간 회)		
판매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까지(일간 회)		
검인신청 매수	총 매				
공연시간	시 분부터		시 분까지(일간)		: 1 회
	시 분부터		시 분까지(일간)		: 2 회
종별		수량	금액		비고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유 료		매	원		
초 대		매	원		
총 계		매	원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번호) :					
주 소 :					
남동구청장 귀하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남동소래아트홀은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민원사무처리부 등록 및 처리
 - 검인 신청·처리 정보 제공
 - 본 아트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설문 조사 등
2. 수집하려는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1년
4.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검인 신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관람권 수불대장

(단위 : 매)

월 일	적 요	수 입									불 출									잔 량									비 고																																																																																																																																																																																																																																																																																																																																																																																																																																																																																																																																																																																																																																																																																																																																																																																																																																																																																																																																																																																																																																																																																																																																																																																																																																																																																																									
		유 료 권						무 료 권	초 대 권	계	유 료 권						무 료 권	초 대 권	계	유 료 권						무 료 권	초 대 권	계																																																																																																																																																																																																																																																																																																																																																																																																																																																																																																																																																																																																																																																																																																																																																																																																																																																																																																																																																																																																																																																																																																																																																																																																																																																																																																										
		R 석	S 석	A 석	B 석	C 석	소 계				R 석	S 석	A 석	B 석	C 석	소 계				R 석	S 석	A 석	B 석	C 석	소 계																																																																																																																																																																																																																																																																																																																																																																																																																																																																																																																																																																																																																																																																																																																																																																																																																																																																																																																																																																																																																																																																																																																																																																																																																																																																																																													

<작성요령>

- ① 공연제목별 당일에 일어나는 수입, 불출의 모든 원인을 기록한다.
- ② 위탁은 불출, 회수는 수입처리한다.
- ③ 유료권은 일반권과 할인권을 구분 표시한다.
- ④ 비고란에는 관람료 등을 기록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동소래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 소속직원이 된다.	③ ----- ----- ----- -- 한다)을 운영하는 기관의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5조(임무)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4. 5. (생략)

제8조(임시휴관일) 조례 제3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관일을 정
할 때에는 구청장은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지변 그밖에 불가
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조
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
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과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0조(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조
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회관 자
체의 공연·전시에 지장을 초래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과 같은 공연·전시 및 행사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구청장은 조례 제7조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
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

3. 4.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제8조(임시휴관일) -- 제4조 단서

-----.

제9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
- 제8조-----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허가) ① -----
- 제8조-----

-----.

1. ~ 4. (현행과 같음)

② ----- 제8조제2항---

4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1조(사용신청 경합시 허가결정 기준) ① 조례 제7조에 의거 대 관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우선 적용하며, 제2호와 같이 사용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2. (생 략)

② ③ (생 략)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트홀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②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의 경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신청 경합시 허가결정 기준) ① -- 제8조-----

-----.

1. 2.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제10조제2항 -----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 제11조제1항제1호 -----
-----.

② -- 제11조제1항제3호-----

[illegible]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관람료) ① ---- 기획공연
전시-----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관람권의 판매 및 정산) ①

(생 략)

② 제1항의 위탁 판매금액 및 내역은 공연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아트홀 기획공연·전시 및 여성합창단 공연 관람권의 판매금액 중 직접 판매 분은 다음날까지, 위탁 판매 분은 정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5조(문화교육 강좌 수강료 등)

① 조례 제18조의 강사료는 문화교육 강좌의 수준과 난이도, 수강생 수 등에 따른 강사와의 계약에 따른다.

② ~ ⑥ (생 략)
<신 설>

(현행과 같음)

② -----

----- . 단, 공모사업 및 공동제작 등 타 기관이 정산의 주체가 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 기획공연·전시 -----

----- .
다만 아트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구금고 납입기한을 정산일로부터 30일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문화교육 강좌 수강료 등)

① --- 제19조-----

-----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업무서식 예외) 이 규칙에서 적용하는 시설의 사용에 대해서는 시설 수탁기관의 규정 등에 따른 별도의 서식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820호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4. 14.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소래역사관을 위탁 할 경우 수탁기관에서 '유물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유물평가위원회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수탁기관에서 유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조례 제18조(유물평가위원회) 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문화관광과
 - 연 락 처 : 전화 453-2132, FAX 453-213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4. 참고자료

-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3년 5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소래역사관을 위탁 할 경우 수탁기관에서 '유물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유물평가위원회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수탁기관에서 유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조례 제18조(유물평가위원회) 제4항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만 6세”를 “6세”로 한다.

제1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에 따라 역사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관리 기간에는 수탁기관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역사관 관람료 (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금 액		범 위	비고
	개 인	단 체		
어 른	500원	300원	· 19세 이상 ~ 64세 이하	
청소년·군인	300원	200원	· 13세 이상 ~ 18세 이하 및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포함)	
어린이	200원	100원	· 6세 이상 ~ 12세 이하(초등학생 포함)	

1. 단체는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함.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미만의 아동은 무료. 단, 단체관람시 어린이 단체요금을 적용.

[별표 2]

역사관 수장품 이용료 (제7조제2항 관련)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사 진 촬 영	1 점	10,000원	
사진원판사용	1 점	5,000원	
타 본	1 점	10,000원	
모 조	1 점	10,000원	

[별표 3]

역사관 시설 대관료 (제34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시청각실(60석)	1일	50,000원	장비시설 사용 포함
전시홀(141.91㎡)	1일	30,000원	㎡ 당 200원 기준
야외공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관람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생략) 2. 보호자가 없는 만 6세 이하의 아동 3. ~ 6. (생략)	제9조(관람의 제한) ----- ----- -----. 1. (현행과 같음) 2. ----- 6세 ----- - 3. ~ 6. (현행과 같음)
제18조(유물평가위원회)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8조(유물평가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에 따라 역사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관리 기간에는 수탁기관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설립과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3-52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2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4. 14.
남 동 구 청 장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곡로48번길 38 (서창동)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곡로48번길 38 (서창동)	2023.04.14.	건축물대장 말소	